

©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  
정책보험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일현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[leo0817@kma.org](mailto:leo0817@kma.org)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5-4218호

시행일자 2015. 8. 28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6210호(2015. 8. 21.)

3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전 검토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고자 2015. 8. 21.자로 ‘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’ 일부개정고시를 알려온 바,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**대한의사협회장**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
(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장)